

☎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36 / 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팀원 전지숙(6536)/ E-mail: kma-js123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26-00441호

시행일자 2024. 4. 15.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「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
알림(식품의약품안전처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-2606(2024. 4. 12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한 소분류 품목을 신설하고 의료기기 허가·심사,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분류 개선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하였음을 알려온바,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산하단체 및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붙임 :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(및 붙임자료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
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이사협의회장, 한국여자
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